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| |
|--------------|
| 2024. 3. 12. |
| 기획재경위원회 |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일자리지원과장)
- 발의일자: 2024. 2. 28.(수)
- 회부일자: 2024. 2. 28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4. 3. 12.)

2. 제정이유

- 청년 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.

3. 주요내용

- 어학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 조항 추가.(안 제17조제3항 신설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청년 기본법」 제19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」
- 예산조치: 2024년도 본예산 50백만원 반영
-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- 입법예고(2024. 2. 1.~2. 21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, 고금리, 고물가, 경기침체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, 우리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통한 자립기반 향상을 위하여 어학·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